

「가

[2012.2.8] [259 , 2012.2.8,]

() 02 - 500 - 2084~208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 수의과학기술시험·분석의뢰서 | | | |
|---|---|---|---------|
| 의 뢰 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사무실) | (전화 :) | |
| 시험·분석 시료명 | | | |
| 시험·분석의뢰내역 | | | |
| 시험·분석의뢰목적 | | | |
| 현 지 출 장 의 필 요 성 여 부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과학기술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의뢰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p> | | | |
| 구비서류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 1부 | |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p>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수 수수료</p>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1]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 구분 | 자격기준 등 |
|-------------------|--|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의사로서 병성감정 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총 3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 |
| 병성감정보조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 |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 | 수량 | 비고 |
|-------------|----------|----|
| 부검실 | 1실 | |
| 소각실 또는 소각로 | 1실 또는 1로 | |
|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 1실 | |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

| 장비명 | 수량 | 비고 |
|--------------------------------|----|----|
| 광학현미경(Microscope) | 1대 | |
| 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 | 1대 | |
| 냉장고(Refrigerator) | 1대 | |
|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 1대 | |
| 원심분리기(Centrifuge) | 1대 | |
| 고압멸균기(Autoclave) | 1대 | |
| 배양기(Incubator) | 1대 | |
| 증류수 제조기(Distilled water maker) | 1대 | |
|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 1대 | |

| | | |
|---|------|--|
|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 1대 | |
| 조직절편기(Microtome) | 1대 | |
| 항온수조(Floating bath) | 1대 | |
|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 1대 | |
| 파라핀 용융기(Paraffin melting oven) | 1대 | |
| 염색बाट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 1대 | |
| 부검도구 | 1세트 | |
| 부검대(Necropsy table) | 1대 | |
|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 1개 | |
| 혈구희석용피펫 (blood cell diluting pipette) | 1대 | |
| 혈구계산판(Counting chamber) | 1대 | |
|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 1대이상 | |
|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 3개이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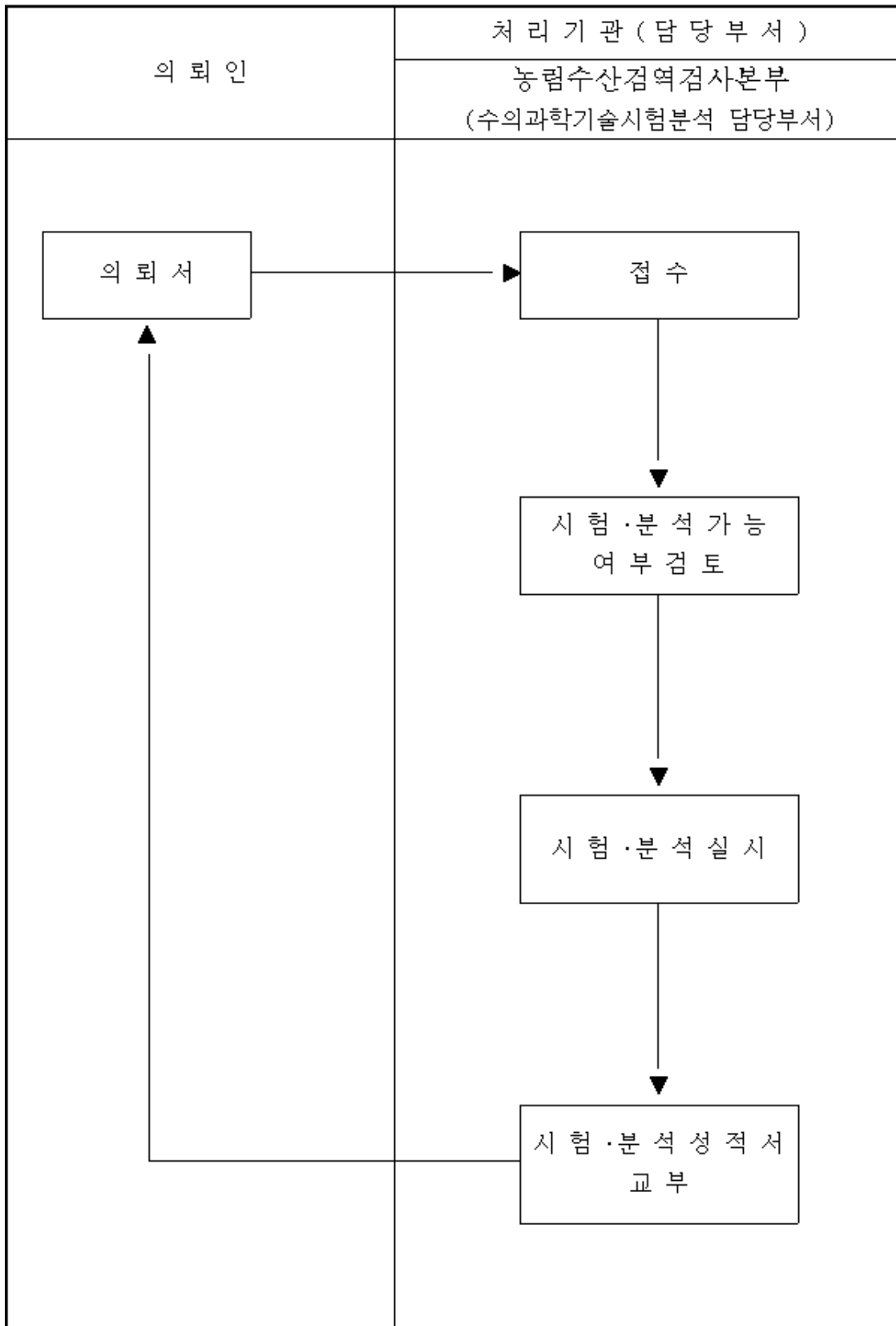
나. 권장기자재

| 장비명 | 수량 | 비고 |
|---|-------|----|
|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 1대 | |
| CO2 배양기(CO2 incubator) | 1대 | |
|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 1대 | |
| 혈액검사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 1대 | |
|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 1대 | |
|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 1대 | |
|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 1대 | |
|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Automatic serum analyzer) | 1대 | |
| 진공펌프(Vacuum pump) | 1대 이상 | |
| HPLC system | 1대 | |
| 효소면역법판독기 (ELISA reader) | 1대 | |
|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 1대 | |

다. 필수 실험실 물품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물품명 | 수량 | 비고 |
|--------------------------------------|--------------------------|----|
| 에칠알콜(Ethanol) |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 |
| 메칠알콜(Methanol) | " | |
|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 " | |
| 요오드(Iodine) | " | |
| 사프라닌(Safranin) | " | |
|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 | " | |
| 커버글라스(Cover glass) | " | |
| 파라핀(Paraffin) | " | |
| 자이렌(Xylene) | " | |
| 김사(Giemsa) | " | |
| 에오신(Eosin) | " | |
| 헤마톡시린(Hematoxylin) | " | |
| 포르말린(Formalin) | " | |
| 페트리디쉬(Petri dish) | " | |
| 혈액배지(Blood agar) | " | |
| 몰리힌턴배지(Muller hinton agar) | " | |
|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 분리동정용 배지수종 | " | |
|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 " | |

[별표 1의2] <개정 2012.2.8>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흠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축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1)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 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

- (1)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 (2) 종축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아.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제 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정대상(질병별·검사항목):

기관(법인)명:

최초지정년월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 쪽)

| 년 월 일 | 구 분 | 당초지정사항 | 변경지정사항 | 확인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1.6.15>

| | | | | | | |
|---|-----|--|--------|--|-----|----|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 7일 | | |
|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회 사 명 | | | | | | |
| 지 정 번 호 | | | | | | |
| 당초 지정 사항 | | | | | | |
| 변경하고자하는사항 | | | | | | |
| 변 경 사 유 | | | |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p> | | | | | | |
| <p>※ 구비서류:</p> <p>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1부</p> <p>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 | | |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음</td> </tr> </table> | 수수료 | 없음 |
| 수수료 | | | | | | |
| 없음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11.6.15>

가축 병성감정 실적(년 월)

 기관명: (축종:) 병성감정 실적

| 병 성 | 질 병 명 | 진단 건수 | | 발생 상황 | | | 발생시·군 별농가수 | 비고 |
|-------|-------|-------|----------|----------|----------|----------|---------------|----|
| | | 농가수 | 검사 두수 | 사육 두수 | 발생 두수 | 폐사 두수 | | |
| 바이러스성 | | | | | | | | |
| | | | | | | | | |
| 세균성 | | | | | | | | |
| | | | | | | | | |
| 기생충성 | | | | | | | | |
| | | | | | | | | |
| 곰팡이성 | | | | | | | | |
| | | | | | | | | |
| 총 양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검사실적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역검사본부 또는 다른 기관 의뢰 시에는 최종 검사기관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진 실적(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한함)

| 검진대상 질병명 | 발생농가 수 | 사육두수 | 발생두수 | 폐사두수 | 발생시·군별 농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른 대상 질병 중 양성 실적을 작성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신설 2011.7.25>

(앞쪽)

|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Travellers | | | |
|---|---|---|------------------------------|
| 성명 Full name | | 국적 Nationality | |
|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D No | | 성별 Sex | []남 Male 男 []여 Female 女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Tel.) | |
|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 | | |
| 직업 Occupation | <input type="checkbox"/> 가축소유자 (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 (incl. its family members) <input type="checkbox"/> 축산농가 고용자 (동거가족 포함) Farm employee (incl. its family members) <input type="checkbox"/> 수의사 Veterinarian, <input type="checkbox"/>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input type="checkbox"/>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input type="checkbox"/>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동물사로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input type="checkbox"/> 원유 수집·운반자 Rawmilk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s | | |
| 여행기간 중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during your travelling. | | | |
| 1) | 2) | 3) | |
| 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V",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during travelling. | | | |
| <input type="checkbox"/>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 체류·경유 (뒷면 참조) Visit or transit FMD, AI affected countries (see back side for country lists) | | <input type="checkbox"/> 우제류(소·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 |
| <input type="checkbox"/> 우제류·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 (cloven-hoofed·poultry) market | | <input type="checkbox"/> 가금류(닭·오리·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 |
| <input type="checkbox"/> 우제류·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 (cloven-hoofed·poultry) market | | <input type="checkbox"/>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 |
| <p>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 작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experience or fail to fill out the Quarantine Declaration Form,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5 million won in f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and 60 of The CONTAGIOUS ANIMAL DISEASE Prevention Act.</p> | | | |
| 신고인 Name of traveler | | 년(yy) 월(mm) 일(dd) | (서명) (signature) |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귀하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 | |

148mm×210mm (녹색지 70g/㎡)

[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11.7.25>

(앞쪽)

|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 Departure Declaration for Farming Interested | | | |
|---|---|--------------------------|--|
| 성명 Full name | | 국적 Nationality | |
| 주민등록번호 National IN No | | 성별 sex | <input type="checkbox"/> 남 Male <input type="checkbox"/> 여 Female |
| 여권번호 Passport |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
|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 | | |
| 직업 Occupation | <input type="checkbox"/>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 its family members) <input type="checkbox"/>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Farm employee(incl. its family members) <input type="checkbox"/> 수의사 Veterinarian <input type="checkbox"/> 가축인공수정사 AI Technician <input type="checkbox"/>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input type="checkbox"/>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input type="checkbox"/> 원유 수집·운반자 Rawmilk collector & carrier,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s | | |
| 여행기간 중 방문할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y where you will stay during your travelling | | | |
| 1) | 2) | 3)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국신고 합니다. | | | |
| 년(yy) 월(mm) 일(dd) | | | |
| | | 신고인 Name of traveler | (서명) (signature)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귀하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 | |

148mm×210mm (녹색지 70g/㎡)

[별표 2] <개정 2012.2.8>

소독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 종류 | 방법 | 소독목적물 | 비고 |
|----------|--|---|--|
| 약물 소독 |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 축사의 바닥·분뇨·분뇨구·오수구·습윤한 토지 등 | ◦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축사의 벽·바닥·울타리·토지 등 | ◦ 뿌릴 때에는 고무 저으면서 사용한다. |
| | 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제1호와 같다. | ◦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
| |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바른다. | 제2호와 같다. | ◦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
| | 5. 석탄산수(석탄산 100분의 3에 물 100분의 97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동물의 다리·사체, 축사, 금속성기계 또는 기구, 가축으로 만든 기구 등 | ◦ 뿌릴 때에는 충분히 섞어서 사용한다. ◦ 알카리성 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물로 씻은 후에 사용한다. |
| | 6.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을 1 : 10 : 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 : 1 : 1,000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동물의 다리·몸체(소를 제외한다)·사체, 축사, 기구·기계류(금속성인 것을 제외한다) 등 | ◦ 금속성의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승홍수는 비금속류의 용기에 사용한다. |
| | 7. 포르말린수(포르말린과 물을 1 : 34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축사, 가축의 몸체·사체, 기구·기계, 뼈·뿔·발굽·가축으로 만든 기구 등 | ◦ 뿔 또는 발굽을 소독할 때에는 3시간 이상 담근다. |
| | 8. 크레졸비누액(3~5%)을 사 | 옷·축사·가축의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 | |
|--|--|
| <p>계 호</p> <p>역학조사반원증</p> <p>소속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활동기간 : ~</p> <p>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특별시·광역시·도소속 [인] 가축방역기관장</p> | |
|--|--|

56mm×80mm(보른용지(1종) 120g/m²)

(뒤 쪽)

| |
|---|
| <p>1.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p> |
|---|

비고

1. 규격 :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 황색
3. 색상 : 적색

| | | |
|--|--|---|
| <p>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p> | <p>몸체·기구·기계·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p> | |
| <p>9. 염산식염수(염산 100분의 2에 식염 100분의 10과 물 100분의 88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경우</p> <p>가. 염산식염수에 소독목적물을 담근다.</p> <p>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18℃ 염산식염수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 다음 중탄산소다 용액(0.8% 이상)을 채워서 소독이 종료된 케이싱을 30분간 중화한다.</p> <p>다.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를 채운뒤 1시간 이상 그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액(0.8% 이상)과 교체하여 다시 30분 이상 둔다.</p> | <p>가죽류(생가죽·염장가죽·산적가죽 등) 천연케이싱 천연케이싱 포장용기</p> | <p>이 소독액 100ℓ로 소독할 수 있는 케이싱은 20kg 이내임</p> |
| <p>10. 가성소다 그 밖에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p> | <p>축사·기구·올타리·분뇨저장용기 등</p> | |
| <p>11. 알콜(70% 이상) 또는 승홍(1%)에 적신 탈지면으로 충분히 닦는다.</p> | <p>가죽류</p> | |
| <p>12.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p> <p>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 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p> | <p>뼈·가죽류</p> | |

| | | |
|---|--|--|
| <p>나. 0.1% 실리콘산나트륨을 첨가한 4% 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린다.</p> | <p>항공기에 한한다.</p> | |
| <p>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p> <p>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뿌린다.</p> <p>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에 18℃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다.</p> <p>다.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운뒤 2시간이상 그대로 둔다.</p> | <p>육류·한약제품 등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의 포장·용기, 비식용 축산물의 포장·용기 및 검역시행장 천연케이싱</p> <p>천연케이싱 포장 용기</p> | |
| <p>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을 10.2그램 이상 섞어 그 온도를 16℃ 이상으로 한 것)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p> | <p>컨테이너</p> | |
| <p>15. 이산화염소(ClO₂ 3%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p> <p>가. 이산화염소(3%) 100분의 1에 물 100분의 99를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p> <p>나.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199 내지 299의 비율</p> | <p>1. 분뇨구·사체 2. 실내·축사·항공기내 3. 기계·기구·울타리 등 4. 뼈·가죽류·모피류·뿔·육류 등 5. 탈취·악취제거 물건 6. 출입구 발판소독·</p> | |

| | | | |
|-------|--|--|--|
| | <p>로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양을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p> <p>다.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49,999 내지 99,999로 완전히 희석한 후에 이를 동물에게 먹인다.</p> <p>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소독제는 그 용법에 따른다.</p> | <p>가축의 몸체</p> <p>가축만 해당한다.</p> <p>허가 시 정한 소독목적물</p> | |
| 혼증소독 | <p>1.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독</p> <p>가. 압력: 상압(1kg/cm²)</p> <p>나. 온도: 상온</p> <p>다. 시간: 4시간 이상</p> <p>라. 산화에틸렌을 기화할 것</p> <p>마. 최종제품의 잔류농도는 50ppm 이하일 것</p> <p>2. 포름알데하이드 혼증소독 : 창고 안에서 실시하거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 혼증소독을 실시한다.</p> <p>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40%) 53밀리리터, 과망간산칼슘 35그램을 섞어 기화한다.</p> <p>나. 시간: 7시간 이상</p> | <p>1. 우황·사항</p> <p>2. 녹용 및 식용으로 제공하는 한약재</p> <p>3. 그 밖에 식용에 제공하는 것</p> <p>1. 실내 및 축사</p> <p>2. 기구·기계 등 장비</p> <p>3. 뿔·발굽·골분 등</p> <p>4. 동물의 털·사료 등</p> <p>5. 그 밖의 옷 및 포장에 사용된 재료 등</p> | <p>◦ 내부까지 소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장치를 사용한다.</p> <p>◦ 소독효과가 불안정하지 아니하도록 13℃ 이상을 유지한다.</p> |
| 증기소독 | <p>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킨다.</p> | <p>옷·모포·포대 및 이와 접촉된 물건</p> | <p>◦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p> |
| 물끓임소독 | <p>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어 1시간 이상 끓인다.</p> | <p>옷·모포·포대·고기·뼈·발굽·반가공사료 및 이와 접촉된 기구</p> | <p>◦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p> |
| 발효소독 | <p>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 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p> | <p>분뇨·깔짚 등</p> | <p>◦ 소 또는 돼지의 분뇨를 소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깔짚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충분히 발효시킨다.</p> |

| | | | |
|-----------------|--|-----------------|---|
| | 지 아니한 깔짚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으로 덮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 | |
| |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 제1호와 같다. | |
| 자외선 소독 | 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선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터 안에 두고 1~2분 동안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루 쬐도록 한다(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른다). | 건조녹용, 옷·모포·포장 등 | |
| 기구·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 |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구·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은 그 용법에 따른다. | 허가 시 정한 소독목적물 | |
| 분무 소독 | 검역검사본부장이 허가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용법과 용량이 있는 소독제를 희석한 후 5초간 소독목적물에 분무한다. | 차량·축사·신발·옷 등 | 분무소독 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7조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 외에 가축방역 또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할 수 있다.

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아니하고 생석회·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

다.

-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긴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코·입·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긴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 다.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킨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가성소다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
- 라. 탄저·기종저 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포르말린수·염산식염수·수산(육살산)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 마.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 1)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 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 2) 가축·지정검역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3)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 4)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 바. 차량의 외부, 바퀴 및 흙받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해야 하며,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 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 염소농도 2%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N)농도 수산화나트륨으로 섭씨 20도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 둔다
- 아.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자.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별표 3] <개정 2011.6.15>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돼지·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 구분 | 대 상 질 병 | |
|----|-----------------------------|-----------------------|
| | 제1종가축전염병 | 제2종가축전염병 |
| 소 | 구제역 | 탄저·기종저·브루셀라병·결핵병 |
| 돼지 | 구제역·돼지열병 | 돼지오제스키병·돼지유행성설사 |
| 닭 | 뉴캐슬(Newcastle)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추백리·가금티프스·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2) 예방접종대상 질병

| 구분 | 대 상 질 병 |
|----|-------------------------------------|
| 소 | 구제역·탄저·기종저·소아까바네(Akabane)병·소전염성비기관염 |
| 돼지 |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 |
| 닭 | 뉴캐슬병·닭전염성기관지염·닭전염성에프(F)낭병 |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 구 분 | 배 점 표 | | | | | |
|------------|-------|------|------|------|------|------|
| | 20점 | 16점 | 12점 | 8점 | 5점 | 0점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5년경과 | 3년경과 | 2년경과 | 1년경과 | 6월경과 | 6월이하 |

나) 제2종가축전염병

| 구 분 | 배 점 표 | | | |
|------------|-------|------|------|------|
| | 10점 | 8점 | 5점 | 0점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2년경과 | 1년경과 | 6월경과 | 6월이하 |

2) 예방접종율

| 구분 | 배 점 표 | | | | |
|-------|--------|------------------|------------------|------------------|--------|
|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평균접종율 | 95% 이상 | 80% 이상 95% 미만 | 65% 이상 80% 미만 | 50% 이상 65% 미만 | 50% 미만 |

※ 비 고

-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1. 소독 설비 |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나. 농장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다. 농장 내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라. 농장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담장·울타리 등 시설 설치 | 4개 모두 적합 | 10 |
| | | 3개 적합 | 8 |
| | | 2개 적합 | 6 |
| | | 1개 적합 | 4 |
| | | 모두 부적합 | 0 |
| 2. 소독 실시 |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나.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소독실시 다.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은 제외한다)구입·사용 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실시 | 4개 모두 적합 | 10 |
| | | 3개 적합 | 8 |
| | | 2개 적합 | 6 |
| | | 1개 적합 | 4 |
| | | 모두 부적합 | 0 |
| 3. 환경· 위생 관리 | 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나.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다.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 설치 라. 쥐·곤충 등을 없애는 시설 설치 | 4개 모두 적합 | 10 |
| | | 3개 적합 | 8 |
| | | 2개 적합 | 6 |
| | | 1개 적합 | 4 |
| | | 모두 부적합 | 0 |
| 4. 가축의 거래기록 유지 |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하 또는 판매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 2개 모두 적합 | 10 |
| | | 1개 적합 | 5 |
| | | 모두 부적합 | 0 |
| 5. 방역 교육 등 |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 2개 모두 적합 | 5 |
| | | 1개 적합 | 3 |
| | | 모두 부적합 | 0 |

나. 등급판정기준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

점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 가) 1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라)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별표 4] <개정 2010.11.26>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제24조제4항 관련)

1.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

- 가. 돼지열병 또는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 나.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소
- 다. 그 밖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2.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 가. 돼지열병의 경우: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 아니하였다고 판정된 돼지
- 나. 돼지오제스키병의 경우: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번식용 돼지
- 다. 소브루셀라병 및 소결핵병의 경우: 소브루셀라병·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소중 혈청학적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소

3. 영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으로서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건강하지 못하여 도축장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절차

-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3>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주사·면역표시증명서 | | | | | | | | |
| 가 사 육 시 설 | 축 사 육 시 설 | 농 장 명 | | | | 소 재 지 | | |
| 소 유 자 (관 리 자)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주 소 | (전화 :) | | | | | | |
| 실 시 내 역 | 목 적 | | | | 연 월 일 | 실 시 두 수 | | |
| | 종 류 | | | | 제 품 명 및 제 조 회 사 명 | 제 조 번 호 (Lot.No) | | |
| 가 축 | 축 종 | 품 종 | 성 별 | 연 령 | 귀 표 (개 체) 번 호 | 특 징 | 주 사 횟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방법 | | | | | | | | |
| 실시자 | 소속 | | | |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사·면역표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도축장으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 2) 재활용시설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도태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다. 도태사실의 확인

- 1) 도축장: 해당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시설: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소속 가축방역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도태방법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른다.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2.2.8>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1. 소각기준

| 구분 | 소각 실시 장소 | 소각 방법 | 비고 |
|------|--|--|---|
| 사체 | 1.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주로 펄나무를 이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방법에 의한다. 가. 연료 가축의 사체, 물건 등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펄나무 및 보조연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한다. 나. 사체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판다. 작은 구덩이 바닥에는 볏짚·건초 등을 깔고, 타르·석유 등을 뿌린 후 펄나무를 쌓는다. 그 위에 가축의 사체를 두고 불을 붙여 완전하게 태운다.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그 장소에서 매몰한다. 구덩이가 있는 지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준하여 태운다. | 1.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매몰할 것 2. 사체와 물건 등을 태운 장소와 그 부근을 소독할 것 |
| 오염물건 | 1. 소각로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2. 당해 물건을 태우는데 충분한 분량의 펄나무 및 보조원료(볏짚·건초·타르·석유 등)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태운다. | ○오염물건을 태운 후 남은 재는 매몰할 것 |

2. 매몰기준

가. 매몰 장소

(1)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3>

| | | | | | | | |
|---|----------------|----------|--------|---------|--------------|----|----------|
| 제 호 ○○○○ (약물목록·면역요법·투약) 증명서 | | | | | | | |
|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 | | 소재지 | | | |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전화 :) | | | |
| 실시내역 | 실시목적 | | 실시연월일 | | 실시두수 | | |
| | 약품명 (제조업체명) | | (투약)방법 | | 사용(투약)량 | | |
| 실시 가 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 번호 | 특징 | 실시 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자 |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 | 성명 |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물목록·면역요법·투약)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청장</p>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일 것

가) 수원지

나) 하천

다) 도로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2)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매몰지 크기를 결정하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할 것

(3) 농장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를 우선 활용하되, 해당 농장부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것

나. 사체의 매몰

(1)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며, 매몰 구덩이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두께 0.2m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에서부터 1m 높이 이상의 흙과 5cm 높이 이상의 생석회를 투입하고, 생석회 위에 40cm 높이 이상으로 흙을 덮은 후 2m 높이 이하로 사체를 투입한다.

(라) 사체를 흙으로 40cm 이상 덮은 다음 5cm 두께 이상으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흙으로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 후,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마) 가스 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흙통을 이용하여 사체와 접촉되도록 설치하고, 가스 배출관의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며, 매립 당시 20㎡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가스 및 용출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매몰한 사체가 용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설치 개수를 늘린다.

(바)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쌓는다.

(사)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 배수로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를 15 : 85)로 충분히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cm 이상)한 후 두께 0.2m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

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m³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3) 사체를 랜더링(rendering)처리시설(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체 등의 운반

- (1) 사체 등은 찢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 (2) 사체 등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등을 하차한 후에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3) 동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6] <개정 22011.7.25>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1. 가축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한다.
 -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
 -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틈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
 -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틈밥을 뿌려주며,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의 함몰·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 사. 매몰지 점검결과 사면붕괴(斜面崩壞)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가축의 사체를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별표 7] <개정 2011.6.15>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1. 지정검역물의 검역

-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나.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식용축산물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官能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 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마. 검역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 가. 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와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하여야 한다.
- 다.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분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한 검역은 제1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4.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다.

5.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관리축산물은 검역검사본부장 정한 요령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별표 8] <개정 2012.2.8>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 검역물의 종류 | 수출 | 수입 |
|---------------------------------|----|--|
| 1. 개·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p>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p> <p>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당일</p> <p>나. 마이크로칩 이식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p> <p>다.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p> <p>라. 중화항체가 0.5IU/ml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p> <p>마.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p> <p>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다만, 마이</p> |

[별지 제8호서식]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 | | | | | | | | | |
| 가축 사육시설 | 농 장 명 | | | 소 재 지 | | | | | |
| 소유자 (관리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 | | (전화 :) | | | | | |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 | | 명령의 이유 | | | | | |
| | 명령이행 장 소 | | | 이행기간 | | | 명령이행 대상두수 | | |
| 명 령 대 상 | 가 축 | 축 종 | 품 종 | 성 별 | 연 령 | 귀표(개체) 번호 | 특 징 | 비 고 | |
| | | | | | | | | | |
| | 사 랑 | | | | | | | | |
| | 차 량 | | | | | | | | |
| 준 수 사 항 | | | | | | |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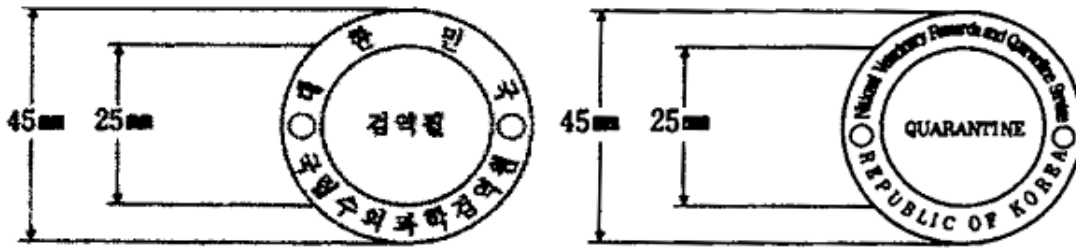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 |
|---|--------------------------------------|--|
| | | 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
| 2. 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7일 | 15일 |
| 3. 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5일 | 10일 |
|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5일 | 40일 이내 |
|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30일 |
| 6. 닭·칠면조·거위·오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2일 | 10일 |
| 7. 휴대 애완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5일 이내 |
| 8. 병아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10일 |
|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30일 |
| 10. 그 밖의 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1일 | 5일 |
| 11.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10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 10일 |
| 1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제11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
| 13. 닭 종란 | 2일 | 21일 |
| 14. 오리 종란 | 2일 | 28일 |
| 15. 타조 종란 | 2일 | 42일 |
| 16.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대상) | 2일 | 18일 이내 |
| 17. 소정액 | 2일 | 3일 이내 |
| 18.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 2일 | 3일 |
| 19.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 5일 | 10일 |
| 20. 메추리 종란 | 2일 | 17일 |

| | | |
|---|----|--------|
| 21. 말정액 | 2일 | 30일 이내 |
| 비고 | | |
| 1.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
| 2. 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

[별표 9] <개정 2011.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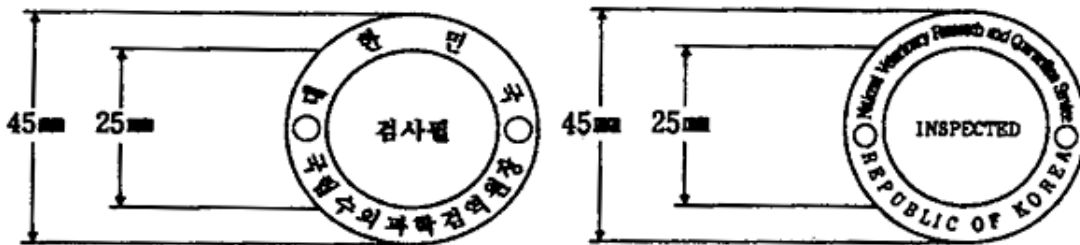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관련)



검사필인란

국문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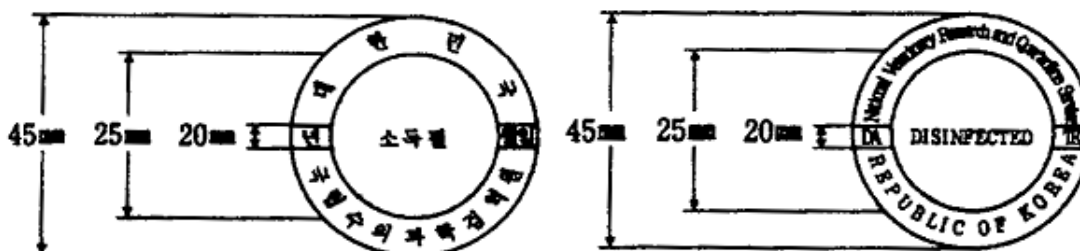
비 고 : "○○"표시란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명칭을 삽입한다.

[별표 10] <개정 2011.6.15>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관련)

국문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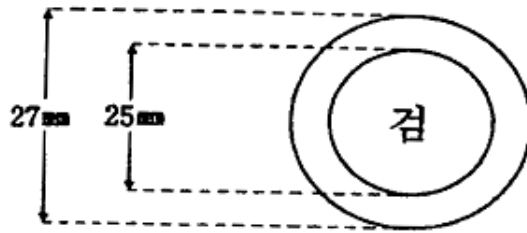
[별지 제9호서식]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살처분명령서 | | | | | | | |
| 가축사육시설 | | | | 농 장 명 | | | | | | | | 소 재 지 | | | |
| 소유자 (관리자) | | |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 소 | | | | | | | | (전화 :) | | | |
| 살 처 분 명령의 내용 | | | | 살처분 이유 | | | | 두수 | | | | 이행기한 | | | |
| 살 처 분 명령 대 상 가 축 | | 축 종 | | 품 종 | | 성 별 | | 연 령 | | 귀표(개체) 번호 | | 특 징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준 수 사 항 | | | | | | | | | | | | |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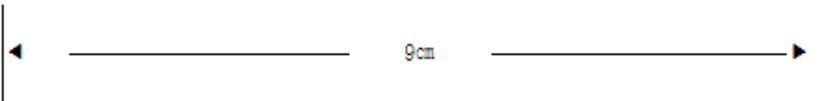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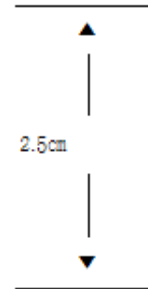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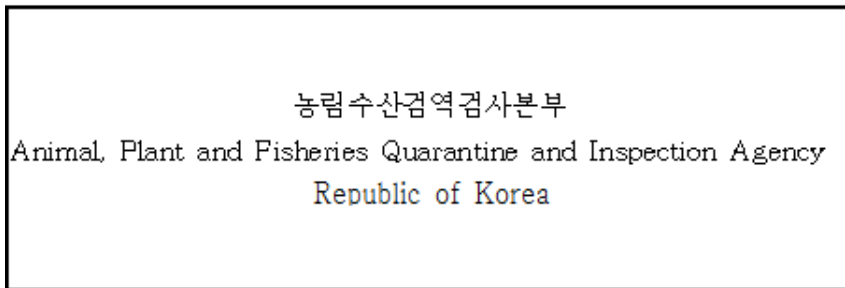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별표 12] <개정 2011.6.15>

검역물포장봉합표(제41조제4항관련)

(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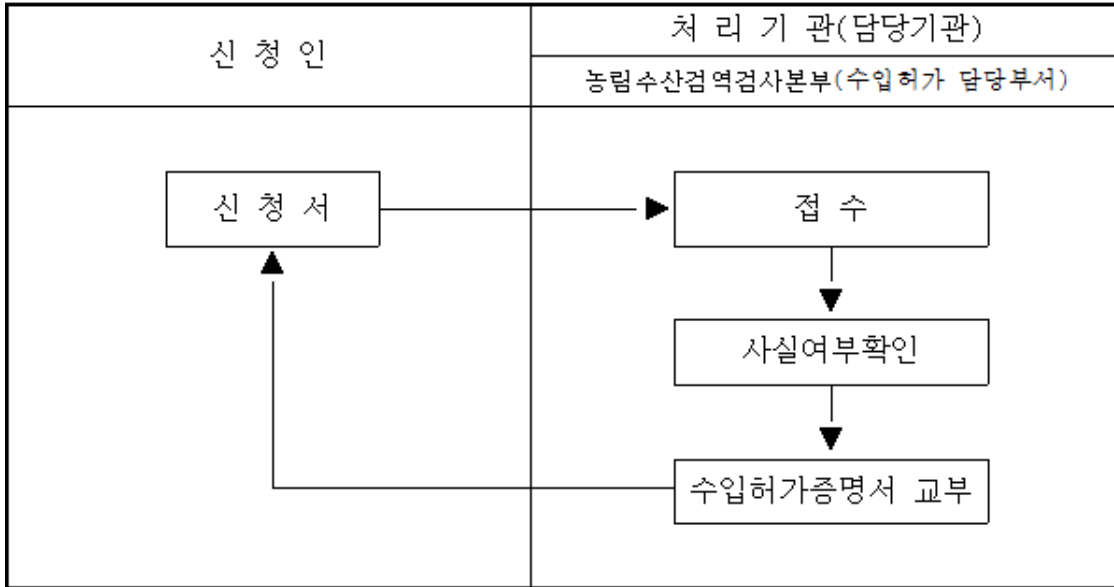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

| | |
|--|--|
| 제 호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 귀하 (우편번호 주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정지(제한)할 것을 명합니다. | |
| 시 설 명 | |
| 정지(제한)의 범위 | |
| 정지(제한)의 이유 |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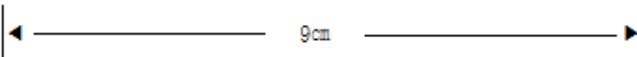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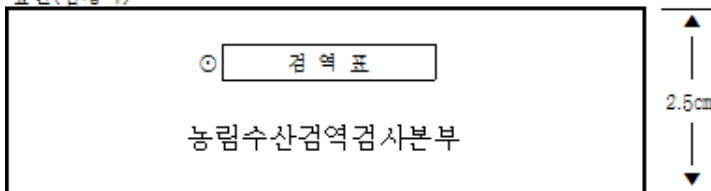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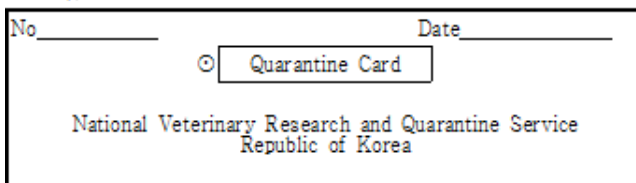
[별표 13] <개정 2011.6.15>

검역문고리표(제41조제4항관련)

앞면(앞정색)



뒷면(앞정색)



(뒤 쪽) (Back)

| | |
|---|-------------------------|
| 도착예정일 : . . . (Estimated date of arrival) | 도착함 : (Arrival port)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소 :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6.15>

(앞쪽) (Front)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 | |
|-----------------------------|---|
| 수입허가번호 Import permit No. | - |
| 수입허가일자 Date of issue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and Item 3 of Article 32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 | |
|---|--|
| 신청인 성명·주소 (Name & Address of applicant) | |
| 동물의 종류·품종 또는 물품의 종류 (Species of animal or Kind of article) | |
| 두수 또는 수량 (Total head or quantity) | |
| 보내는 사람의 성명·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주의(Remarks)

1. 위의 동물 또는 물품의 발송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In consigning the above animal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2. 보내는 사람은 위의 화물을 이 증명서와 같이 뒤쪽에 기재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or should address the above commodities to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 indicated on the back of this certificate along with this certificate.

3. 받는 사람은 위의 화물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이 행한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OFFICIAL SEAL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표 14] <개정 2011.6.15>

소류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앞면(앞정색)

| | |
|-----------------------|-------|
| 계 호 | 년 월 일 |
| ◎ 소 류 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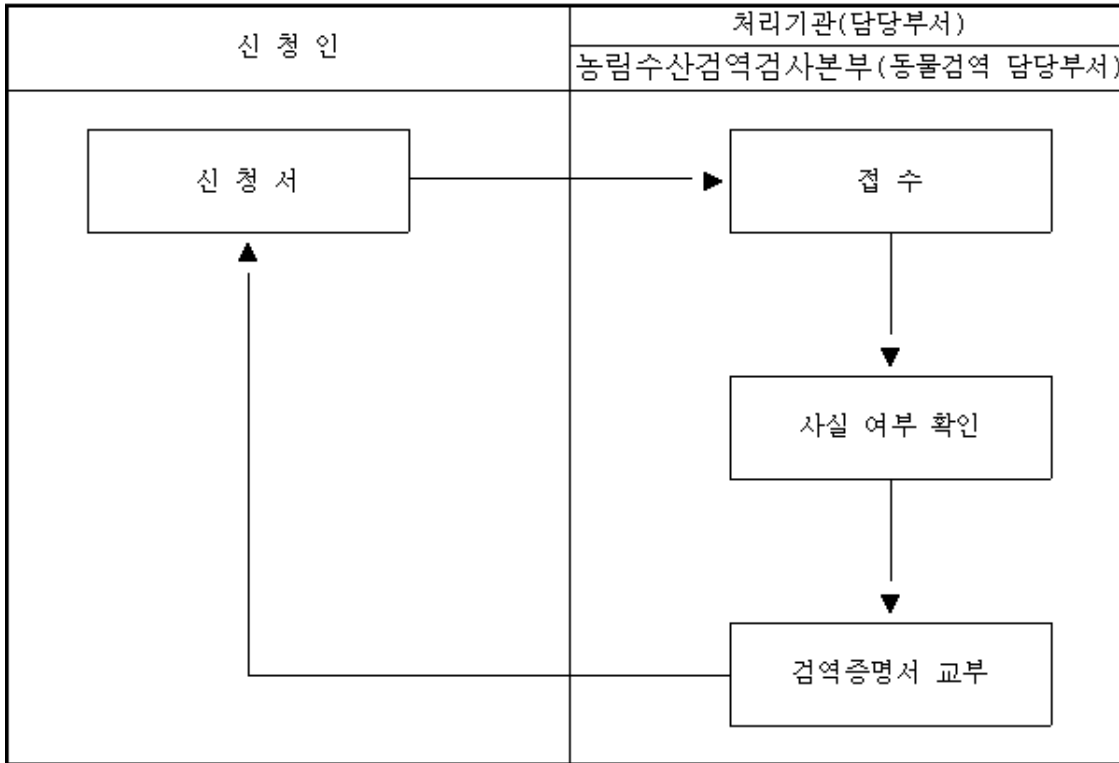
9cm

뒷면(앞정색)

| | |
|--|------------|
| No _____ | Date _____ |
| ◎ Disinfected Card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Republic of Korea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처리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 작성요령

- ① 신고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 해당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 ③ 신고기관 :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 기재
- ④ B/L번호 : 선하증권(B/L)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 ⑤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 ⑥ 선(기)명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 ⑦ 수입화주 : 해당검역물의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검역물을 발송한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 ⑨ 수출국 : 해당검역물을 수출하는 국가명 기재
- ⑩ 거래품명 : 해당검역물의 품명(종류 또는 품종) 기재
- ⑪ 모델·규격 : 해당검역물의 성별, 연령, 털색 및 암, 수 구분하여 두수 기재
- ⑫ 수량 : 해당검역물(동물)의 두수 기재
- ⑬ 금액 : 해당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 ⑭ 도착항 : 해당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 ⑮ 생산국 : 해당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 <16> 선적항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 <17> 선적일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 <18> 담당자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표 14의2] <개정 2012.2.8>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 구 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계류시설 | 1)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격리축사 |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5. 분뇨 및 오물 처리장 |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출입구 소독조 | 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7. 보정시설 |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8. 종업원 탈의실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9. 출입제한 |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2. 수출 동물 검역시행장

| 구 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p>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p> <p>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p> <p>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p>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계류 시설 | <p>1) 수출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p> <p>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 |
| 4. 격리축사 |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5. 보정 시설 | 검역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리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6. 종업원 탈의실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7. 출입구 제한 |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 8. 기타 |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3.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 기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p>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p> <p>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p> <p>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p>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으로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계류시설 | 1) 야생조수류를 안전하게 사양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다만, 동물의 | |

| | | |
|------------------|--|--|
| | <p>특성상 적합한 시설일 경우는 제외)로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야수류 동물의 수입상자 우리 등이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p> <p>2)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p> | |
| 4. 격리축사 |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5. 분뇨 및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종업원 탈의실 및 세면장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7. 출입구 제한 |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 |

4.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p>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p> <p>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p> <p>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p> | |
| 2. 검역시행장소의 위치 | <p>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p> <p>2)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우</p> | |
| 3. 검역계류 시설 | <p>1)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p> <p>2)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3)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p> | |

| | | |
|-------------|---|--|
| | 4)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 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4. 계류사의 구조 | 1)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330㎡(1회 10,000수 수용규모) 이상, 오리의 경우 200㎡(1회 2,000수 수용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축사를 별도 구획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벽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
| 5.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소각장 | 폐사체, 오염물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7. 출입 제한 | 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 및 사료 등의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8. 전임관리인 숙소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임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 숙소는 가능한 계류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 |

5. 실험동물(SPF)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 기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구비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의 위치 |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계류시설 | 수입동물이 안전하게 사양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 4. SPF 실험 동물의 사육시설 |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부로부터 가축전염성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 |

| | | |
|-------------------|---|--|
| | <p>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 <p>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p> <p>2)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을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이 있어야 한다.</p> <p>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p> <p>4) 관리 장비 및 비품·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곤충 등의 동물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p> | |
| 5. SPF 실험동물의 사육환경 | 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6. 분뇨 및 오물처리장 |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7. 보정시설 |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8. 출입제한 |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6.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 구 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 | <p>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기자재: 전기톱(육절기를 포함한다), 전기드릴, 알코</p> | |

| | |
|----------------------|--|
| | <p>올램프, 끌, 심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자비소독기, 액량계, 저울(100kg),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칼, 이동검사대(조명등이 있는 비부식성 내수성재질로서 가로 120cm×세로60cm×높이90cm 이상),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p> <p>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p> <p>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등</p> |
| 2. 보관시설 | <p>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p> <p>2) 보관시설은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p> <p>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충분한 깔판을 보유하여야 한다.</p> |
| 3.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 | <p>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냉장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도 ~ 10도이어야 하고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p> |
| 4.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 <p>종업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수세시설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p> |
| 5. 기타 | <p>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

7. 원피 및 동물의 털 보관장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
| 1. 관리수의사실 | <p>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채취 기구 등</p> <p>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p>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p>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이어야 한다.</p> | |
|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 | <p>1) 소독기구: 고압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1대, 연막소독기 1대등</p> <p>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p> | |

| | | |
|------------------------|--|--|
| 4. 차량 소독조 |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5. 보관시설 |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수모류(모피를 포함한다)전용보관창고에는 훈증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6.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7. 배수시설 | 배수로는 안전하게 복개되어야 하며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
| 9. 출입구 제한 |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8. 수입 원피 및 모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 1. 검역관리인실 |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 | 1) 소독기구: 고압동력 및 수동분무기, 연막 소독기 각 1대 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4. 차량 소독조 |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5. 검역시설 | <p>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p> <p>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p> <p>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p> <p>5) 검역물 보관을 위한 창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p> <p>6) 모피가공장에서는 포르말린가스 및 밀폐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 |
| 6. 작업통로 시설 |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 및 보관장소로부터 가공장소까지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 |
| 7.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8. 배수시설 |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9.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
| 10. 출입구의 제한 |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될 수 | |

9. 수출 원피류 및 동물의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 기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p>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기자재: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독기구 등</p> <p>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p> <p>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p>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검역시설 |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 | |

| | | |
|------------|---|--|
| | <p>추어야 한다.</p> <p>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p> <p>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 |
| 4. 출입구의 제한 |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 5. 기타 |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한다 | |

10.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 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 1. 관리수의사실 | <p>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 기자재: 세균배양기, 고압멸균소독기, 냉장고, 천칭 등 실험실 운용에 필요한 기자재(다만, 별도 실험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등</p> <p>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p> <p>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등</p>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 및 육류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검역시설 주위 | <p>1) 작업장의 주위환경은 매연, 먼지, 악취, 공기오염 등으로 축산물 위생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p> <p>2) 주차장 및 차도 등은 먼지발생이 없도록 완전하게 포장하여야 하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p> | |
| 4. 검역 시설 | <p>1) 작업장 넓이는 작업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p> <p>2) 작업장 바닥은 타이루,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p> <p>3) 작업장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이루,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을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p> | |

- 4) 천정은 내수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5) 작업장 출입구는 자동 또는 반자동 개폐식으로 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은 바닥에서 1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 6) 채광, 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7)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8)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와 기계, 기구류의 세척시설 및 소독시설이 있어야 한다.
- 9)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0)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11) 기구, 용기류 등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또는 고정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 12) 작업장내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13)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14) 가공장은 제조과정별 작업대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기계, 기구류는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 및 세척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벽 및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16) 소독위생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 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 17) 냉동실(영하 18도이하), 냉장실(영하 2도 ~ 10도)은 규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5. 탈의실 | 종업원 수에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 및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 | |
| 6. 화장실 | 1)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종업원 수에 적당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소독조와 세면장이 있어야 하고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식 설비를 하여야 한다. | |
| 7. 기타 | 1)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시에는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수의사실을 구비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

11. 수입 수모류(깃털 포함) 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 시 설 기 준 | 비고 |
|-------------|---|----|
| 1. 검역관리인실 |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천칭,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1대, 냉장고, 수동식동력분무기 1대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차량소독조 | 검역시행장 차량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검역시설 |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가공장내에는 수모류(깃털 포함)를 세척 탈지할 수 | |

| | | |
|------------------------|---|--|
| |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혼증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 |
| 5. 작업통로의시설 |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로부터 보관장소까지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 |
| 6.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7. 배수시설 |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정화조 |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9.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

12. 수출·입 종란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
| 1. 검역준비실 | 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이 쉬운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냉장고, 소독기, 액량계 등 2) 소독약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독약을 선택적으로 비치(포르말린가스 소독약, 차아염소산나트륨, 크레졸비누액 등) | |
| 2. 검역시행장위치 | 검역시행장은 주변이 청결하여야 하며, 양계장·도계장과 다른 부화장 등 관련시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
| 3. 검역계류시설 | 1) 부화장은 수입종란을 단독으로 보관, 소독, 검란, 부화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부화장의 출입구에는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수세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부화장은 방서, 방충시설이 있어야 한다. 4) 부화장은 고정건물(판넬, 콘크리트 등으로 건축) | |
| 4. 폐기물 처리 | 검역물 수송상자, 단각, 이상란 불합격품, 약추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 |
| 5. 출입자 통제 | 부화장은 검역기간 중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기타 |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으면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13.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
| 1. 관리수의사실 | <p>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p>가. 기자재: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독기구 등</p> <p>나. 소독약품: 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p> <p>다.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p> | |
| 2. 검역시행장 위치 | <p>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p> | |
| 3. 검역시설 | <p>가.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p> <p>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
| | <p>다.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p> <p>라.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마.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 <p>바. 검역장소는 반입창고, 소독실, 반출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의 면적은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p> <p>사. 소독실은 그 바닥이 오수 등이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반입구 및 반출구를 각각 별개로 하여야 하며, 소독조는 18℃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불침투성 재료이어야 한다.</p> | |
| 4. 출입구의 제한 | <p>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p> | |
| 5.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 <p>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p> | |

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 | |
|------------|--|--|
| 6. 배수시설 |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 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7. 정화조 |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8. 그 밖의 사항 | 수입금지 지역산 천연케이싱 소독과 관련하여 관할 검역 검사소장은 검역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14. 수입 돼지 검역시행장

|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
| 1. 공통시설 | 수입돼지 동물검역에 필요한 기타 검역시설은 별표 14의 2 제1호의 수입동물 검역시행장 시설 기준에 따른다. | |
| 2. 소독시설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막을 수 있는 다음 시설이 있어야 한다. 가. 차량 출입구에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전신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검역준비실,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축사입구에는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3. 검역시설 | 검역시행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수입돼지,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4. 가축전염병 비 발생 |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장소는 최근 1년간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페렴, 돼지썩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및 홍막페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 |
| 5. 관리인 숙소 |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 숙소는 가능한 검역시행장 내부에 있어야 한다. | |
| 6. 그 밖의 사항 |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중 해당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양관리사항 및 방역관리 계획 등을 관할검역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5. 그 밖의 검역시행장: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14호까

[별표 14의3] <개정 2011.6.15>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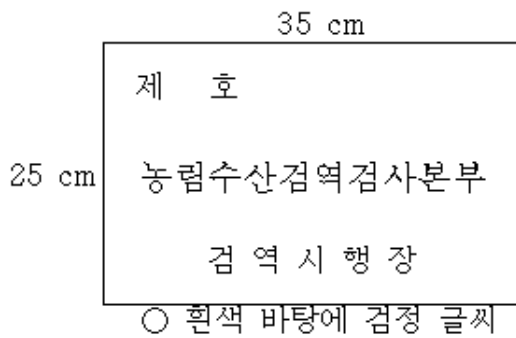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 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방역 본부에 알려야 한다.
3.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축산물가공장인 검역시행장에서는 검역이 완료된 후 같은 시설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다른 장소로 운송하려면 검역관에게 알린 후에 운송하여야 하며, 수출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하고, 지정검역물 외의 화물과 혼적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동물검역시행장은 별지 제17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에 따른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 및 파기된 종란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B/L)단위로 부착하여야 한다.
 9.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별표 14의4에 따른 간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10.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도축장 또는 식육가공장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1.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지정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이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은 검역물량 파악 제출 등 검역검사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방역조치 등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교육 등에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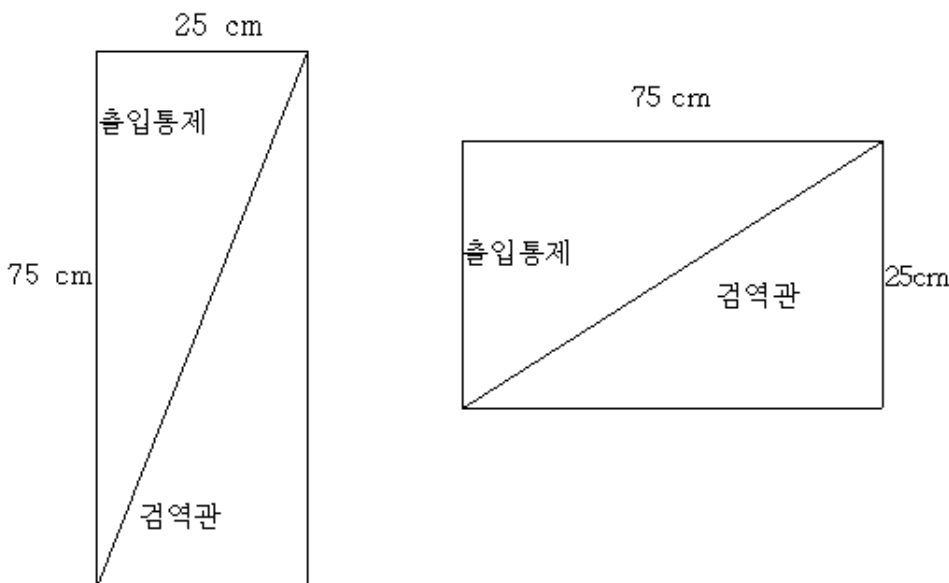
[별표 14의4] <개정 2011.6.15>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1. 검역시행장 출입구 간판



2.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앞 간판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14의5] <개정 2011.6.1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이 소재한 가축방역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초생추의 입고 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역원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 나. 폐사추, 오물, 배설물 등에 대한 소각 매몰 등의 방역조치
 - 다. 그 밖에 검역상 필요한 사항
3.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시설에는 해당 초생추 외에는 입고 전 30일부터 검역종료시까지 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종료 즉시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 가. 검역장소 | 나. 축주명 |
| 다. 품종 | 라. 수수 |
| 마. 원산지 | 바. 도입일자 |
| 사. 검역종료일 | 아. 예방접종등 기타 특기사항 |
5.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초생추의 검역종료 사실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초생추에 대하여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다음과 같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수시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또는 병성감정 등의 실시
 - 나.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 발생시 격리·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 사항을 시·도지사 및 축주에게 보고(통보)
 - 다. 예방접종 권장 및 지도

[별표 15] <개정 2011.6.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제43조제1항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조건

| 구분 | 설비조건 |
|-----|---|
| 동물 | <p>가. 화물칸은 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물 수송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p> <p>나.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한다.</p> <p>다. 화물칸은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p> <p>라. 차량후면은 개폐식 문으로서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앞좌석에는 수송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이 있어야 한다.</p> |
| 축산물 | <p>가.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중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봉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 <p>나. 수송중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등이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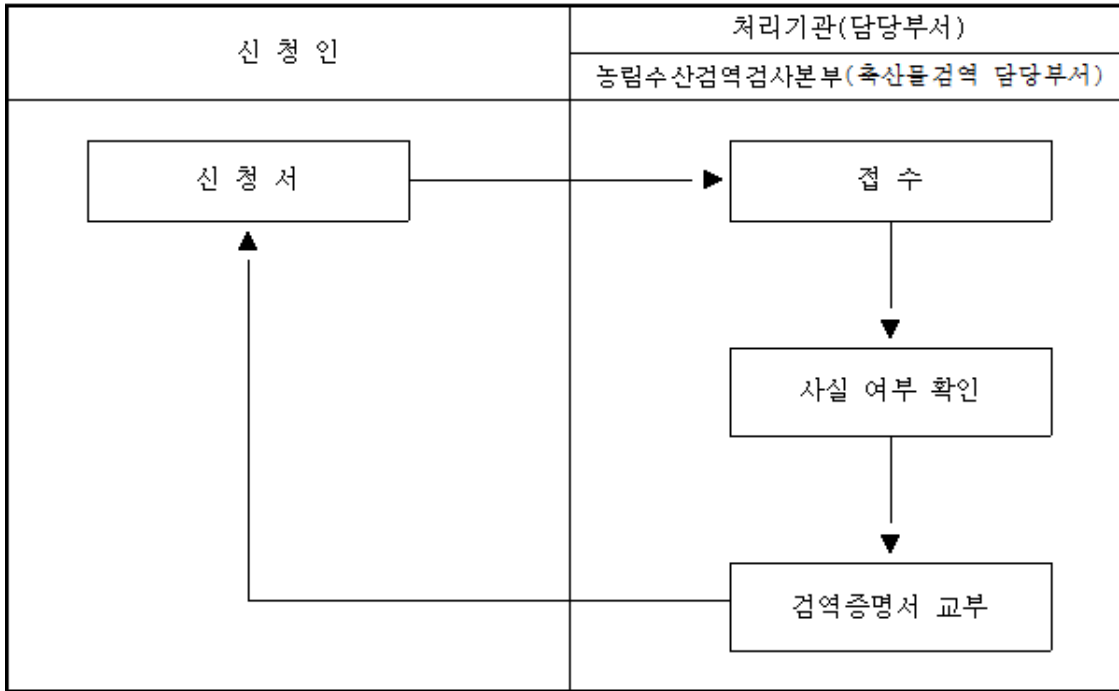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 가. 사양관리인과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나.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

3. 그 밖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처리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 작성요령

- ① 신고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 해당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 ③ 신고기관 :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 기재
- ④ B/L 번호 : 선하증권(B/L)번호를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 ⑤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 ⑥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 ⑦ 수입화주 : 해당검역물의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검역물을 발송한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 ⑨ 수출국 : 해당검역물을 수출한 국가명 기재
- ⑩ 거래품명 : 해당검역물의 품명 기재
- ⑪ 금액 : 해당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 ⑫ 총중량 : 해당검역물의 총중량(kg) 기재
- ⑬ 순중량 : 해당검역물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kg) 기재
- ⑭ 도착항 : 해당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 ⑮ 선(기)명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 <16> 총 포장개수 : 해당검역물의 총 포장 개수 기재
- <17> 생산국 : 해당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 <18> 선적항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 <19> 선적일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 <20> 담당자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표 16] <신설 201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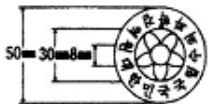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제3조의2제2항제5호 관련)

1.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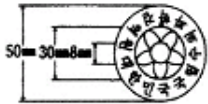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6.15>

|  대한민국농림수산물부 동물검역증명서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 | |
|---|--------------------------|
| 발행연월일 : Date of issue : |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 |
| 종류 및 품종 (Species and Breed) | |
| 두 수 (Number of Head) | |
| 성별 및 연령 (Sex and Age) | |
| 털 색 (Color) | |
|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ee) | |
| 선박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and flight) | |
| 생산지 (Place of production) | |
| 수출국 또는 수입국 (Country of export or import) | |
|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Place & Date of shipping) | |
|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Port & Date of arrival) | |
| 예방약의 종류 및 예방접종 연월일 (Kind and Date of Vaccination or Test etc.) | |
| 비고 (Remarks) | |
| <p>위의 동물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p> <p>대한민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성명 (Signature) 검역관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p> </div> </div> | |

210mm×268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6.15>

|  대한민국농림수산물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 |
|--|----------------------------|
| 발행연월일 : Date of issue : | 검역증번호 : Certificate NO. |
| 종 류 (Type of products) | |
| 포장수량 및 포장형태 (Type and Number of packages) | |
| 중 량 (Weight) | |
| 표 시 (Identification Marks) | |
|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ee) | |
| 선박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and flight) | |
| 생 산 지 (Place of production) | |
| 수출국 또는 수입국 (Country of export or import) | |
|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Place & Date of shipping) | |
|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Port & Date of arrival) | |
| 검 사 결 과 (Results of inspection) | |
| 비 고 (Remarks) | |
| <p>위의 축산물(사료 등)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p> <p>대한민국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PUBLIC OF KOREA</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성명 (Signature) 검역관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p> </div> </div> | |

210mm×268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1.6.15>

|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 | | | 5일 | |
| 대표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회사명 | | | | | |
| 검역대상물 | | | | | |
| 검역시행장소재지 | | | | | |
| 지정 신청 면적 | 대지: | m ² | 검역시설: | m ² | |
| 검역시설 | | m ² | | m ² | m ² |
| | | m ² | | m ² | m ²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p> |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사항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 |
| | <p>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 1부</p> <p>나. 시설 평면도 1부</p> <p>다.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합니다] 1부</p> <p>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p> | | <p>건물등기부등본(수입축산물만 해당합니다)</p>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11.6.15>

(앞 쪽)

제 호

검역시행장 지정서

| | | | |
|------|--|--------|--|
| 대표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지 정 사 항

| | | | | | | | |
|--------|-----|-------|-------|-------|--|--|--|
| 검역대상물 | | | | | | | |
| 검역시행장 | | | | | | | |
| 회 사 명 | | | | | | | |
| 지정신청면적 | 대지: | m^2 | 검역시설: | m^2 | | | |
| 검역 시설 | | | | | | | |
| | | | | | | | |
| 지정 기간 | | | | | | | |
| 지정 조건 |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 쪽)

| 년 월 일 | 구 분 | 당초지정사항 | 변경지정사항 | 확인(날인) |
|-------|-----|--------|--------|--------|
| | | | | |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11.6.15>

|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 | | |
|--|---------|--|--------|
| 채용자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 | 회사명 | | |
| | 소재지 | | |
|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 | 수의사면허번호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검역업무를 담당할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채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p> <p>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p> | | | |
| <p>※ 구비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p>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08.2.5>

조 류 관 리 일 지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검역관 : 서명 또는 날인

1. 입고사항

| 구 분 | 기 록 사 항 | 비 고 |
|-----------|---------|-----|
| 수 입 년 월 일 | | |
| 수 입 총 수 수 | | |
| 입고시폐사수수 | | |
| 입 고 수 수 | | |

2. 관리일지

| 구 분 \ 월 일 | | | | | | | | | |
|-------------|--|--|--|--|--|--|--|--|--|
| 일 기 | | | | | | | | | |
| 실 내 온 도 | | | | | | | | | |
| 실 내 습 도 | | | | | | | | | |
| 금 일 폐 사 수 수 | | | | | | | | | |
| 폐 사 소 견 | | | | | | | | | |
| 폐 사 후 처리사항 | | | | | | | | | |
| 식 육부진수수 | | | | | | | | | |
| 하리혈변하는수수 | | | | | | | | | |
| 호흡장애수수 | | | | | | | | | |
| 기타불량수수 | | | | | | | | | |
| 급여사료의종류 | | | | | | | | | |
| 검역시행장내근무인원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08.2.5>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 | | | | | |
|-----|-------------------------|------------|----------------------|--|--|
| 총 계 | 원 산 지 (생 산 지) | | 부 화 년 월 일 (수입년월일) | | |
| | 수 수 | 암 | 총 계 변 동 사 항 | | |
| | | 수 | | | |
| 총 란 | 생 산 년 월 일 | | | | |
| | 수집 및 보존방법 | | | | |
| 입 란 | 입 란 년 월 일 | | | | |
| | 입 란 수 | | | | |
| | 입란시소독내역 | | | | |
| 발 생 | 발생시작일시 | 년 월 일 시 | 발생수량 | | |
| 기 타 | 예방접종내역 (일자, 질병명, 용량) | | | | |
| | 수 출 내 역 | | | | |
| | 참 고 사 항 | | | | |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의10서식] <신설 2008.2.5>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1. 일반사항

| 축주 | 품명 | 입난일자 | 입난수 | 발생수 | 수출국 | 선(기)명 | 수출일자 | 비고 |
|----|----|------|-----|-----|-----|-------|------|----|
| | | | | | | | | |

2. 관리 및 임상검사 사항

| | | | | |
|----------|------------------------|---------------|----------------|--|
| 종계 | 생산지 | | 수입 또는 부화년월일 | |
| | 수수 | 암 | 수 | |
| 종란 | 생산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보존방법 | | | |
| 입란 | 입란시 조치사항 (소독 등) | | | |
| 발생 | 발생시작일 | 년 월 일 시 | | |
| 기타 | 예방접종내역 (일자, 질병명 용량) | | | |
| | 수출내역 | 암 | 수 | |
| 발생후 건강상태 | | | | |

소견 :

검역관 :

①

판정 :

년 월 일

검역관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7호의12서식] <신설 2008.2.5>

종란관리일지

작성자 : 날인 또는 서명
 검역관 : 날인 또는 서명

1. 일반사항

| 구분 | 기록사항 | 비고 |
|----------|------|----|
| 원산지 | | |
| 수입년월일 | | |
| 입란년월일 | | |
| 입란수 | | |
| 발생예정일 | | |
| 입란시 소독내역 | | |

2. 관리사항

| 구분 | 월일 | | | | | | | |
|---------|---------|--|--|--|--|--|--|--|
| | 파란등폐기란수 | | |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부화장내 온도 | | | | | | | | |
| 부화장내 습도 | | | | | | | | |
| 관리인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7호의13서식] <신설 2008.2.5>

동 물 관 리 일 지

회사
 작성자 : 날인 또는
 서명
 검역관 : 날인 또는
 서명

1. 일반사항

| 종류 | 입 고 년월일 | 입고두수 | 수출국명 | 선(기)명 | 년령 | 성별 | 모색 |
|---------|------------|------|------|-------|----|----|----|
| | | | | | | | |
| 입검당시 상태 | | | | | | | |

2. 관리일지

| 검사일자 검사사항 | | | | | | | | | |
|--------------|--|--|--|--|--|--|--|--|--|
| 영양상태 | | | | | | | | | |
| 피 부 병 | | | | | | | | | |
| 호 흡 기 | | | | | | | | | |
| 채식상태 | | | | | | | | | |
| 배설물상태 | | | | | | | | | |
| 배뇨상태 | | | | | | | | | |
| 외 상 | | | | | | | | | |
| 폐사두수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사료종류 | | | | | | | | | |
| 종사인원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4서식] <신설 2008.2.5>

수 입 화 물 (검 역) 표

| | | | |
|---------|-----|-------|----|
| 품 명 | | | |
| 수 량 | C/T | 중 량 | kg |
| 입항년월일 | | 입고년월일 | |
| 선 명 | | | |
| B/L NO. | | | |
| 기 호 | | | |
| 화물종별 | | | |
| 수입신고여부 | | | |
| 화 주 명 | | | |
| 수출국명 | | | |
| 검역사항 | | 경유국 | |
| 비 고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6.15>

| [소 독 취·곤충제거] 명령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대상자주소 | | | |
| 명령대상 | 지정검역물 | 종 류 | 수 량 |
| | | | |
| | 운송차량 | 차 종 | 수 량 |
| | | | |
| 기 간 | | | |
| 장 소 | | | |
| 방 법 |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 취·곤충제거)를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인]</p>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6.15>

| | |
|--|--------------------|
| 제 호 가족방역판(검역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족전염병예방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방역판(검역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육산과학원장 | 사 진 (2.5cm×3cm) |
|--|--------------------|

86mm×54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50mm×7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 |
|--|
| 제 호 가족방역사증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족전염병예방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 방역사로 위촉되었음을 증명합 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1호서식]

| | | | |
|--|-----|-------------|--|
| 제 호 | | 검사시료(물건)수거증 | |
| 수거장소 | 시설명 | | |
| | 주 소 | | |
| 수거대상품목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명 | | | |
| 수 거 품 명 | | | |
| 수 거 수 량 | | | |
| 수 거 사 유 | | | |
| 수 거 일 시 | | | |
| 피수거자 또는 입회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주 소 | | |
| 비 고 | | | |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물건)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수거자 소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p>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8.2.5>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8.2.5>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08.2.5>